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조주홍 의원 외 9명)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주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5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조주홍 · 배한철 · 김인중 ·
정영길 · 장용훈 · 황병직 ·
이진락 · 이운식 · 최병준 ·
김지식 의원 (10명)

1. 제정이유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거리예술”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

3조)

다.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도내 시·군,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조 례 안 : 불임참조

4.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4조, 제18조, 제21조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군의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①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거리에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덕환
입 안 주 무 부 서	문화예술과	통 보 (조 치) 일	2017. 9. 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거리에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체크리스트(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검 토 의 건 서

☐ 조례명 :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문화예술과		거리예술의 정의, 지원대상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제정은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은 안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7조(재정지원) 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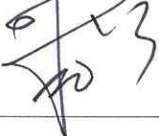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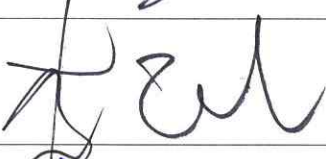
- 안 제5조 및 제7조의 내용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 문화예술과 행정6급 이경호(054-880-3121)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거리에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조 구 흥		
이민환		
김 인 중		
정 영 권		
장 홍 훈		
한 병 직		
이 진 역		
이 운 석		
최 명 권		
김 지 식	